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15
----------	-------

발의연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위성곤 · 민병덕 · 김기표
김성환 · 박균택 · 이건태
박희승 · 이재관 · 조인철
박정현 · 이준석 · 한민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등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어 이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의 영향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 등을 목적으로 조업 제한 구역에서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4조 등).

법률 제 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24미터”를 “12미터”로 한다.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
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제5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u>24미터</u> 이상인 어선 2. (생 략) ② ~ ⑤ (생 략)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 ----- ----- ----- ----- ----- ----- 1. ----- <u>12미터</u> -----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44조(벌칙)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u>
<u>2의2.</u> (생 략)	<u>2의3.</u>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10. (생 략) ②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u> 4. · 5. (생 략) ② · ③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